

의안번호	2206836
의 퇴 인	서미화 의원
회 답 일	2025.2.17.
추계번호	24C6249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 추계) 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21억 6,500만원(연평균 24억 3,300만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기본계획의 수립(제5조)	70	-	-	70	-	140	28
연도별 시행계획(제6조)	400	400	400	400	400	2,000	400
실태조사(제7조)	300	-	-	300	-	600	120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확대(제17조)	1,885	1,885	1,885	1,885	1,885	9,425	1,885
합 계	2,655	2,285	2,285	2,655	2,285	12,165	2,433

주: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이고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이므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공공기관등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7조(실태조사)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의무규정
4	안 제8조(권리중심 공공일자리지원사업의 실시 및 지원센터의 설치·지정)	(제1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등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개발 및 발굴, 중증장애인에 대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정보 제공 및 상담,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연계 등의 사업(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음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재량규정
5	안 제11조(교육)	(제1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등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참여자의 역량 개발을 위하여 현장실습 등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의무규정
6	안 제 12조(정당한 편의제공 등)	(제1항)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 및 지원센터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의무규정
7	안 제13조(홍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등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및 중증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홍보를 실시하여야 함	의무규정
8	안 제14조(조사·연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와 관련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의무규정
9	안 제15조(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적극 추진 공공기관등에 대한 지원)	(제1항) 정부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는 공공기관등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거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 외의 보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음	재량규정
10	안 제17조(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확대)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창출한 다양한 형태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민간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홍보하여야 함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을 기획, 운영,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배치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의무규정
		(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등 및 민간 기업·법인·단체 등과 함께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	○ 최근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2	안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	○ 최근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3	안 제7조(실태조사)	○	○ 최근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4	안 제8조(권리중심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의 실시 및 지원센터 의 설치·지정)	X	·현재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등에 근거하여 2007년부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인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2024년 예산 기준 2,226억 9,500만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복지형 일자리의 세부 직무유형 중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와 관련된 직무도 포함되어 있음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은 2020년 서울시가 최초로 실시하였으며, 2024년 기준 “장애 유형별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현재 경기도, 경상남도, 강원도 등으로 관련 일자리 지원 사업이 확산됨(2024년 기준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5	안 제11조(교육)	X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 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6	안 제 12조(정당한 편의 제공 등)	X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 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7	안 제13조(홍보)	X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차별금지 확산 사업을 통해 장애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2024년 예산 기준 8억 1,100만원)
8	안 제14조(조사·연구 등)	X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복지·장애인일자리 관련 조사·연구, 정책개발을 실시하고 있음(2024년 예산 기준 18억 7,000만원)
9	안 제15조(권리중심공공 일자리 적극추진 공공기관등 에 대한 지원)	X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 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10	안 제17조(권리중심공공 일자리의 확대)	○	○ 최근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의 실시 및 지원센터의 설치·지정(안 제8조), 홍보(안 제13조), 조사·연구 등(안 제14조)은 현재 관련 유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제정안에 따라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 상황에서 확대되는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을 자세히 알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안 제11조), 정당한 편의제공 등(안 제12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적극 추진 공공기관등에 대한 지원(안 제15조)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추진할 사업에 대한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대상 범위 및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가 곤란하여 본 추계에서 제외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기본계획의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안 제5조) 보건복지부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는 비용은 유사사례인 “제6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3~’27)”의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기간 동안 총 1억 4,000만원으로 추계
 - 보건복지부는 “제6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023년에 7,000만원의 예산을 집행
 - 2026년부터 3년마다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기간 동안 단가가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표 2]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70	-	-	70	-	14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안 제6조)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공공기관등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계기간 동안 총 20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 경기도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지원방안 및 계획”을 위하여 수행한 연구용역(2021년 기준 2,000만원)을 토대로 산출
 - 사업개요: 장애인 자립생활 및 고용현황, 지원사업 등을 파악하여 중증장애인 고용 및 자립생활 증진에 대한 계획 수립 자료 제공
 - 보건복지부, 17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공공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¹⁾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 2026년부터 매년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기간 동안 단가가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표 3]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따른 비용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시행계획 비용(A)	20	20	20	20	20	—
시행계획 수립 지역 및 기관 수(B, 개)	20	20	20	20	20	—
합 계(C=A×B)	400	400	400	400	400	2,000

주: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1) 특별시: 서울특별시
 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도: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 (안 제7조) 실태조사 비용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기간 동안 총 6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 고용노동부는 “2023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3억원의 예산을 편성
- 제정안에서는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 첫 해인 2026년부터 3년마다 실태조사를 위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되, 추계기간 동안 단가가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표 4]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실태조사(안 제7조)	300	-	-	300	-	6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안 제17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한 홍보, 교육, 협의회 구성·운영을 하는 경우 추계기간 동안 총 94억 2,5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예산 중 홍보(2024년 예산 기준 506만원) 및 교육 지원(2024년 예산 기준 1,370만원) 사례를 준용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되, 추계기간 동안 단가가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관련 협의회 구성·운영은 위촉위원회에 대한 회의수당만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서울시의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촉위원 수 및 회의수당 단가, 회의 횟수를 적용하여 추계
 - (위촉위원 수) 2024년 서울시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총 23명의 위촉위원으로 구성
 - (회의수당 단가) 서울시 세출예산서 상의 위촉위원 1인당 회의수당 단가인 20만원을 적용
 - (회의 횟수) 서울시의 장애인복지위원회는 1년에 1~2회의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여 1년에 2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 2026년부터 매년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기간 동안 단가가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표 5]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홍보, 교육, 협의회 구성·운영에 따른 비용추계: 2026~2030년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관련 홍보	506	506	506	506	506	2,530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관련 교육	1,370	1,370	1,370	1,370	1,370	6,850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관련 협의회	9	9	9	9	9	45
합 계	1,885	1,885	1,885	1,885	1,885	9,425

주: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4. 추계 결과

- (일부 추계) 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21억 6,500만원(연평균 24억 3,300만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표 6]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기본계획의 수립(제5조)	70	—	—	70	—	140	28
연도별 시행계획(제6조)	400	400	400	400	400	2,000	400
실태조사(제7조)	300	—	—	300	—	600	120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확대(제17조)	1,885	1,885	1,885	1,885	1,885	9,425	1,885
합 계	2,655	2,285	2,285	2,655	2,285	12,165	2,433

주: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이고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이므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이고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이므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강시온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시온	02-6788-4742	sionkang@nabo.go.kr